

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(안) 심 사 보 고

의안 번호	729
----------	-----

2009. 4. 1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 3. 4. 김창현 의원의 3인
- 나. 회부일자 : 2009. 3.23.
- 다. 상정일자 : 2009. 3.26.

2. 제안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김창현 의원

나. 제정이유

-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방지하고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1) 위원회의 기능(안 제3조)

-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
-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
-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
-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
-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

하는 사항

2) 위원회의 심의대상(안 제4조)

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.

다만,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.

3) 위원회의 구성(안 제5조)

○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○ 공무원 중 국장은 3인으로 하며, 구의원은 2명으로 한다.

○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 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등으로 한다.

4) 용역결과 관리활용(안 제12조)

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 과품을 기획공보과장에게 제출하고, 기획공보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광진구에서 발주되는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용역사업에 대하여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지양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식은 본칙 제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음

주요내용은

1. 안 제3조 및 제9조에서 일정금액 이상 용역사업에 대해 용역의 필요성 및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·심의 하므로써 불요불급한 용역사업이나 용역비 과다계상, 불용등의 사례를 사전에 방지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,

※현재 전국 24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중 부산시,대구시, 인천시,경기도등 88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· 시행중 이고,

서울시의 경우 서울시,종로,양천,관악('08.8.1),서초('08.7.17)구등 4개구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중에 있으며,

광진구는 토목, 건축, 조경, 설비분야의 사업시행시 공사설계의 적정성 및 공법 등의 자문을 위해 광진구기술자문단 운영규정을 제정·시행하고 있음(1995. 4.10)

2.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설계금액 기준으로 3천만원이상 단 학술용역사업은 2천만원으로 규정

○ 타구용역과제 심의대상 기준

종로구 : 건당 설계금액3,000만원이상 모두

양천구 : 건당 3,000만원이상, 학술용역은 2,000만원이상

관악구 : 건당 3,000만원이상, 단,위원장 요구시 3,000만원이하도 가능

서초구 : 건당 3,000만원이상, 단,위원장 요구시 3,000만원이하도 가능

○ 광진구 년도별 용역사업 현황

2008년 133건, 7,416백만원(3천만원 이상 40건)

2007년 96건, 5,086백만원(3천만원 이상 27건)

2006년 63건, 3,053백만원(3천만원 이상 14건)

3.안 제5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, 용역대상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의 구성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이미 운영중에 있는 광진구 기술자문단과의 업무중복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할 것임

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2조(조례)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0조(자문기관의 설치)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조언·권고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
상위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므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를 위해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없음

5. 토 론

- 찬성토론 : 없음
- 반대토론 : 없음

6. 심사결과

-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